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2.28)

1. 미국, 기후변화법안 영향 분석

1) USDA 보도자료 (2009.12.18) 주요 내용

- ※ USDA의 기후변화법안 영향 분석에 대한 Tom Vilsack 장관의 발표문 주요 내용임.
- 오늘 USDA 수석 경제학자 Joe Glauber는 탄소공제(carbon offset)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포함한 에너지 및 기후법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부문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법안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, 탄소공제 등에 따른 이득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.
- 이번 발표에서는 USDA 자체 모형과, Texas A&M 대학교 연구원들이 개발한 FASOM 모형 등 두가지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. (FASOM 모형은 기후법안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EPA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가 이용한 모델임.)
- 이달 초, Glauber 박사는 FASOM 모형 분석 결과를 하원의 보존, 신용, 에너지 및 연구에 대한 농업분과위원회(House Agriculture Subcommittee on Conservation, Credit, Energy and Research)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.
- 나는 FASOM 모형이 결과로서 제시한, 향후 수십년동안 이루어져야 할 조림 사업 전망치가 농업계에 상당한 걱정을 유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농지 소유주들이 본 모형의 결과가 제시한 수준만큼 실제로 조림을 시행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- Glauber 박사와 USDA가 시행한 연구 및 조사에 근거할 때, FASOM 모형이 기후변화법안 시행 결과로서 제시한 적정 조림 수준

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 FASOM 모형은 기후 변화법안을 더욱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- 최근의 다른 연구 결과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, 농지를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면서까지 조림을 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분을 상쇄하거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.
- 나는 에너지 및 기후법안의 구성이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통해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, 농업에 해가 되는 어떠한 결과도 본 법의 의도가 아니라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. 하원은 최근 통과된 기후법안에서 농업 부문의 정당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, 상원 역시 이러한 노력을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- USDA와 EPA는 분석 모형에 적용되는 기본 가정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. 나는 FASOM 모형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가정들에 대해 EPA와 같이 재검토해 줄 것을 Glauber 박사에게 요청하였으며, 나아가 기후변화법안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을 왜곡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 분석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법안 시행을 통한 농업소득 창출 방안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